

대전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110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예리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16.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0471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0.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4. 10. 접수 제43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9행 말미 “마쳤”을 “마쳤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8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9. 9. 6. 이미 E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2019. 12.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E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진 사실, 2020. 4. 1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E은행에 신탁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설령 2019. 12. 23.과 2020. 4. 1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선수익자인 D조합의 선의가 인정되는바 결론은 동일하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누구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나 수익자인 D조합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원고는 C에 협조하여(그 경위가 C의 사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직전에 옆 호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고 및 D조합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게 한 점, 사해행위취소소에서 수익자의 선의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나 D조합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알면서도 C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D조합이 선의라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준, 판사 신지은, 판사 이효선